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5호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4)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승씨앤아이		
	주 소	우0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논현동) 6층		
	전화번호	02-792-9087	팩스번호	02-792-9086
신청인(2)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전화번호	02-3438-1848	팩스번호	02-3438-1899
신청인(3)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 소	우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10층)		
	전화번호	02-750-8312	팩스번호	02-750-8200
신청인(4)	법인명(성명)	(주)이산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신청인(5)	법인명(성명)	(주)건화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관양동)		
	전화번호	02-6938-7550	팩스번호	02-6938-7588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74호
- 명 칭 :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

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7.16. ~ 2029.07.15.(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